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5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68)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, 제5조)
 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3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
- 나. 사용 표현 순화(안 제2조)
- 다. 상위법 당연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6조)

4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개정)
- 입법예고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(안 제2조)에는 사용 표현 순화하는 내용과 (안 제6조)상위법 당연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고, (안 제4조, 제5조)에는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으로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재정)

-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삭제 <2016. 5. 29.>